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 · 신충휴***

<요 약>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과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외국의 조세 지원제도와 현행 우리나라 조세지원체계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영역의 경제적 활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벤처기업 등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인정제도 이외에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세정책방향은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자분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출연 또는 투자에 대해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매대금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연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논문 심사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과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세무사, sch4226@cu.co.kr, 교신저자

이처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제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을 입법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조세특례제한법, 출자자 또는 투자자, 협동조합

I. 서 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영역의 경제적 활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U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경제구조가 저성장·저고용 국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¹⁾ 사회적경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경기회복의 필수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Georeta Ilie, 2013).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 정부 출범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정책과제로 하나로 선정하였다. 현 정부의 주요 100대 국정목표 중 “사람 중심의 경제”의 핵심정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저성장 국면의 직면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교육지원, 인건비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그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양적으로 크게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내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4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적인 생태계 조성과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²⁾

기획재정부(2015)가 발표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조직은 영세한 규모와 취약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금융접근성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³⁾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이 과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

1)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주요 EU국가뿐만 아니라, 캐나다 퀘벡 주, 멕시코, 에콰도르 등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2014년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 정의당 박원석의원 등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16년도에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유승민의원 등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3) 2014년말 기준, 2,198개 협동조합의 총 자산액은 약 1,263억원 정도이며, 이 중 출자금은 894억원

에 정착하고 현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최근 2017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면 금융지원, 판로확대, 인력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추진방안과 더불어 조세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조세지원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⁴⁾ 물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 2년간 법인세 50%를 직접 감면받는 특례제도가 존재하기에 더 이상의 조세지원은 불필요하거나 현재에도 충분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재의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외국의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를 검토·분석한 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지원방안을 정책적·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세무학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기존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 김진수(2011), 전병욱(2015) 등의 연구⁵⁾가 존재하긴 하나, 사회적기업의 한정에서 조세지원방안을 논의하였기에 이번 연구와는 정책방향과 지원방안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학의 관점에서 접근할 시기이며, 이 논문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세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Ⅱ절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근거와 우리나라 현재의 조세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절에서는 주요 외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 가능한 조세지원제도를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70.8%), 부채는 약 368억원(29.2%) 정도이다. 특히 총 부채액 368억원 중 금융대출은 223억원(60.5%), 개인차입금은 145억원(39.5%)로, 개인차입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4)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하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 김진수(2011)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저율과세,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상향,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전병욱(2015)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확대가 필요하고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을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제V절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II.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근거와 우리나라 조세지원현황

1.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배경

가. 사회적경제 개념 및 의의

1900년대 초 산업자본주의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학계에서 처음 논의한 샤를 지드(Charles Gide)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의 조직과 같이 협력과 연대, 상호부조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규정하였다(Gide, 1904 ; 한국개발연구원 2016, 12에서 재인용). OECD(1999)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C(2016)에서는 “공동의 욕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개인의 이윤보다는 회원의 이익 추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통한 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각 국가의 처한 경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되고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조직 구성원 또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연대,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키며 지역공동체의 발전 또는 기타 공익에 기여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영역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경제 분야가 주목받는 이유는 빈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및 실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을 통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최근 EC의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정의는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유럽의 협회의 사회적경제 원칙헌장(The 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 of Social Economy Europe)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보다는 개인적·사회적 목적이 최우선 ②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회원 ③ 회원,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 결합 ④ 회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⑤ 연대와 책임원칙의 옹호와 적용 ⑥ 자율적인 관리와 정부로부터의 독립 ⑦ 대부분의 잉여는 지속가능한 목표추구, 회원 혹은 이해관계자에 이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의 조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유발시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EC, 2016).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등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Monzón and Chaves(2012), Birchall(2013), 박정희(2014) 등 국내외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현황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경제기본법안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기업)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내·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동조합(8개 특별법에 설립된 협동조합 포함)⁷⁾,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회적경제조직은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취약계층 또는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창출, 소득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들 조직은 본래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미국,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제3의 섹터(the third sector)로 분류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현황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말 현재 1,856개가 설립되었고 이중 비영리법인인 588개(31.6%), 영리법인인 1,268개(68.4%)로 구분된다.⁸⁾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2017년 7월말 현재 각각 11,674개(일반협동조합 10,951개, 사회적협동조합은 723개) 및 1,370개가 설립되었으며 자활기업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189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각 관계부처로부터 인건비, 경영 등의 컨설팅, 교육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⁹⁾

7)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특별법(예 :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특별법에 설립된 신협, 농협, 수협 등의 금융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는지는 학자 간 전문적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8) 2017년 11월 사회적기업 인증현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자료 참조

9)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부처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사회적경제조직이 중복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들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사회적 경제조직 개요 및 설립현황

구 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연도	2012년	2007년	2011년	2012년
주요설립목적	소득창출,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소득창출 일자리창출	자활의욕 고취 일자리창출
설립현황 ^{주1)}	11,674개 (일반 10,951개, 사회적 723개)	1,856개	1,370개	1,189개
정부 지원제도	인건비지원, 경영·회계·노무 컨설팅지원, 교육, 판로지원 등	인건비지원, 경영·회계·노무 컨설팅지원, 세제지원, 교육, 판로 지원 등	마을기업 자문단 운영, 컨설팅 운영, 사업비 및 판로지원 등	창업, 경영지원, 교육지원, 판로지원, 인건비지원 등

주1) 사회적기업은 2017년 11월말 기준,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2017년 7월말 기준, 자활기업은 16년말 12월 기준에 해당

※ 자료출처 : 각 부처 홈페이지 참조

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세법상 취급

(1) 협동조합

<표 2>와 같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된 협동조합과 8개의 특별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며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이윤을 배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세법상 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전체사업의 40%이상 공익사업을 해야 하며 이윤을 배당할 수 없으며 설립근거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8개의 특별법에 설립된 협동조합 중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탁)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는 설립근거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에 특별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설립근거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제외한 개별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있다.

〈표 2〉 협동조합 세법상의 취급

협동조합	설립법(법개정연도)	설립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근거	세법상 취급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1957)	—	비영리 법인
수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	
업연초협동조합	업연초협동조합법(1963)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1980)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197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1982)	새마을금고법 제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011)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	영리법인
일반협동조합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상법상에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¹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설립 및 사업종류에 따라 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거나 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3)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지역주민 또는 단체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설립될 수 있으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이들 조직도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립 및 사업종류에 따라 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거나 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4)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으로,¹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기업의 경우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설립될 수 있어 설립 및 사업종류에 따라 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거나 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2. 우리나라 사회적기업¹²⁾에 대한 조세지원현황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¹³⁾ 즉,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세액감면기간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¹⁴⁾

11) 서울시 사회적경제포털 홈페이지(<http://sehub.net>)참조

12) 특별법에 따른 금융협동조합(예 : 신협, 농협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동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 예탁금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동법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 1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동법 제167조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

1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3항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¹⁵⁾ 이는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특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¹⁶⁾ 다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거나 영·유아원에 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병의원이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에 의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회적기업만의 조세지원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¹⁷⁾ 또한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¹⁸⁾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1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17) 『지방세특별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18) 『지방세특별제한법』 제22조의4 제2호 및 제3호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¹⁹⁾ 다만, 세액감면기간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²⁰⁾ 이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된 특례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연동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3. 소 결(시사점)

이상의 논의와 같이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들 조직은 크게 주식회사 또는 비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데, 상법상의 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반면에 민법상의 재단, 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특별법의 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의 범주에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인증 또는 지원단체로 승인받은 상법상의 회사, 예컨대 주식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최소한 이들 조직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동일한 조세지원제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법상의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과도한 조세지원제도가 이어진다면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세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대부분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우대조치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지방세 등의 직접적인 조세지원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인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조세지원제도만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Ⅲ. 주요 외국 및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분석

제Ⅲ장에서는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측면에서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 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3항

1. 주요 외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 현황

가. 미국²¹⁾

미국은 2000년 지역사회 재개발에 대한 세금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의 일환으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5D에 신흥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 이하 NMTC)제도²²⁾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NMTC제도는 저소득 지역(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지역은 빈곤율이 최소 20%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 중간 가구소득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 치명적인 재난지역 등을 의미한다(Sean Lowry, 2012). 이러한 NMTC 제도에는 직접투자구조(direct investment), 단계별 지분투자구조(tiered equity investment structure), 단계별 차입자본(tiered leveraged investment structure)을 이용한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Lauren Lambie-Hanson, 2008), 세액공제 혜택은 투자구조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내국세법에 따르면,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 이하 CDE)는 지역사회 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저소득 지역 등에 적격지분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를 하면 투자자 또는 출연자에게 최초 투자연도부터 3년간은 5%, 그 다음 4년간은 6%로, 총 7년간 39%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국의 국세청에서는 CDE가 NMTC 제도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수반한다. 예컨대, CDE가 저소득 지역이 아닌 지역에 투자하거나 투자자가 원금을 중도 인출하는 등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나. 영국²³⁾

영국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커뮤니티 개발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지역사회투자세액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Credit, 이하 CITC)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NMTC제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CITC제도는 저소득 또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나 비영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최대 5년간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영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투자세금감면(Social Investment Tax

21)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 참조

22) Harvard University's Ash Institute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에 의하면 NMTC제도는 미국 정부가 선정한 50개의 혁신제도 중 하나로 선정·평가하였으며(Lauren Lambie-Hanson, 2008), 수년동안 저소득 커뮤니티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23)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참조

Relief, 이하 SITR)제도를 Part 5B of Income Tax Act 2007에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SITR제도는 개인투자자가 적격(eligible) 사회적기업²⁴⁾에 지분투자를 한 후, 3년간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물론, 사회적기업도 주식을 발행하면 벤처 캐피탈 세금감면제도(Venture Capital Trusts an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HM Treasury, 2013).

다. 캐나다

캐나다 퀘벡 주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노동자연대기금, 사회투자네트워크, 지역사회투자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기금 중 1983년 설치된 노동자연대기금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퀘벡 주 정부에서 <표 3>와 같이 연도별로 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김종걸 외 10인, 2015). 이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중앙정부 성격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비율은 매년 5%씩 인하 조정하는 반면에, 지방정부 성격인 퀘벡 주정부의 세액공제 비율은 계속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표 3> 과세연도에 따른 연방 정부 및 퀘벡 주 정부 세액 공제 비율

과세연도	연방 정부 세액공제 비율	퀘벡 주 정부 세액공제 비율	세액공제비율
2015년	10%	15%	25%
2016년	5%	15%	20%
2017년 이후	0%	15%	15%

<자료출처 : 김종걸 외 10인, 2015.12. 『사회적금융기금의 국제비교』

2.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분석

사회적경제조직은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인 비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주식회사 형태인 협동조합도 세법상의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제2장 제1절~5절까지(단, 3절은 제외²⁵⁾)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4) 상시 임원 및 근로자수 250명이하, 1,500만불의 자산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3절에서는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조

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적용가능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하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각종 세액감면·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 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에 열거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중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한 표로, 8개의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8조의3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내국법인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국법인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내국법인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조세특례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 과도한 조세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적용여부

법법	법조문 (주요내용)	주식 회사	비주식회사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특별법 협동조합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	○	×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	○	×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	○	×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	○	×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	○	×

직은 국제간 거래가 드문 사항이므로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나.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적용가능 여부

<표 5>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절에 열거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중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한 자료이다. 주식회사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면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해 협동조합 등의 비주식회사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사회적경제조직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및 동법 제14조 조세지원제도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벤처기업이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제2절의 조세특례제도를 비교하면 비주식회사보다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더 많은 조세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의 출자는 주식과 달리 가치증대가 없기 때문에 지분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항과 같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 다만,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도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또는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항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⁶⁾ 특히 지역사회의 구성원 등이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동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절에 열거된 대부분의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동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⁷⁾

26) 특별법에 따른 신탁, 농협 등의 금융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 출자자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특별법에 따른 신탁, 농협 등 5개 금융협동조합의 자산은 17년말 기준으로 500조를 초과하고 있다. 이들 금융협동조합의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조세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법	법조문 (주요내용)	주식 회사	비주식회사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특별법 협동조합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	○	×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	○	×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	×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	×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14조	창업자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	×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	×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16조의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	○	×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다. 현행 투자촉진(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적용가능 여부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표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4절, 제4절의 2에서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표 6>은 위 조세특례제도 적용여부를 검토한 표로,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모두 동일하게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조세형평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4절, 제4절의 2에 열거된 대부분

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29조의5, 제29조의6,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우선의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²⁸⁾ 정책적으로 조세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법	법조문 (주요내용)	주식 회사	비주식회사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특별법 협동조합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투)	○	○	○	×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	○	×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	×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	○	—
제28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	○	○	—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	—	—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	○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	×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	○	×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30조의3은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고 동법 제29조의6, 제30조는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다.

라. 현행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열거하고 있는데, <표 7>에서 검토한 것처럼 주식회사는 대부분의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일부 제도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제5절에서 열거한 조세특례제도를 협동조합이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면 주식교환 등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거나 합병 시 이월결손금 특례제도 등 구조조정 측면에서 다양한 세액감면·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협동조합 등은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 급속하게 양적으로 확산된 만큼, 앞으로 이들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법	법조문 (주요내용)	주식 회사	비주식회사		
			협 동 조 합	사회적 협동조합	특별법 협동조합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	—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	—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	○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	○	×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	×	×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39조	채무의 인수·번제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	×	×

〈표 7〉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계속)

법법	법조문 (주요내용)	주식 회사	비주식회사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특별법 협동조합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	×	×
제44조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	×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	×	×

3. 분석결과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논의와 같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주요 외국에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률의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구성토록 되어 있다.²⁹⁾ 이 기금의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29)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28조 제1항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출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률의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에서부터 제5절까지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형태로 구분하여 조세지원제도 적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사회적경제조직만을 우대하기 위하여 법인세·지방세 등의 직접적인 조세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의 영세성³⁰⁾ 등을 감안할 경우 지방세 등의 직접적인 조세우대조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구성원으로부터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의 제1절(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제4절(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및 제4절의2(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열거한 조세특례제도는 비주식회사 형태인 협동조합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조직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요건을 충족된다면 조세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절(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과 제5절(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서는 비주식회사 형태보다는 주식회사 형태인 기업이 보다 많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협동조합은 일반 상법상의 회사와 같이 “주주”라는 용어가 없으며 주식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주식발행 등 자본을 다양하게 조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³¹⁾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창출시킨다(Majee, 2007).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가 향상되는 양(+)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Chloupkova et al. 2003). 이론적으로 상법상의 회사보다는 공동의 욕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론적 관점에서 더 부합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때에는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세제상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상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14년말 현재 협동조합의 평균자산은 57백만원, 이중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 유형자산의 평균금액은 5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사회적 자본이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전통적인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능과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지역사회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소진광, 1999).

직의 설립형태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unfair rivalry)을 유발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IV.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제Ⅳ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지원방향을 논하고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 측면,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자 측면, (3)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바람직한 조세지원방향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또는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전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간접적인 조세지원과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 조세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Ⅱ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법인세, 지방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이다. 현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경우 법인세, 지방세 등의 직접적인 조세지원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 2년간 50% 감면 등의 조세우대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적경제조직은 동법 제2절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의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위의 조세지원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더라도 현행 규정상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³²⁾ 중복적 성격이 있는 조세우대조치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자금이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2002년 이후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 지

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참조

원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이들 조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British Council, 2015).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인건비 보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사업은 재원조달 및 방식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이들 조직의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국 등 주요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 또는 투자자 중심의 조세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지원 사업은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정경쟁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필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재단 및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 다양한 조직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입법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에 맞춰 ‘주주’ 또는 ‘주식’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세제혜택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세특례 적용여부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 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설립형태에 따라 조세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상법상의 회사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동조합인 사회적경제조직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설립형태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 등 주식회사가 지원받는 조세지원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이들 조직의 자생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조세지원방안

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방안

(1)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상법상의 회사를 제외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으로 만든 사회경제적 단체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의존하고 이는 곧 자본을 축적한다.³³⁾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재무적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가 않다.³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성원이 납입하는 출자 또는 투자액에 대해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³⁵⁾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벤처기업 등과의 형평성 관점과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벤처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아래와 같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자 및 출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말 기준으로 2,198개 협동조합의 총 자산은 약 1,263억원이며 이 중 출자금은 894억원으로, 약 70% 이상을 출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34) 금융기관은 매출액 등의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출심사를 수행하므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이들 금융기관으로 사업자금을 차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 (이하생략)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이하생략) ……

현 행	개선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1~5. (생략) <신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1~5. (현행과같음) 6.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출자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허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제정된 이후로 사회적경제조직은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들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육성정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에 대한 최적화는 벤처기업 등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기업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법상의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법인이며 이윤이 발생하면 그 구성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대상이다.³⁶⁾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동반성장을 위해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의결권 없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법상의 회사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자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거나 동법 제13조를 개정³⁷⁾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를 적용받는 특별법에 따른 금융협동조합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8조의

36)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특별법에 설립된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은 1천만원 이하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7)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경제조직도 특례대상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2, 제8조의3 등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협동조합 간 협동이 이루어질수록 조세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선안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88조의5를 적용받는 법인의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이하 생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9조, (이하 생략)

(3)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필요

우리나라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거래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양도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최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³⁸⁾ 이러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지분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출자 또는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³⁹⁾ 이에 벤처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를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지분 거래도 추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3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640(법령해석과-1695), 2017.06.20.

3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는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행	개선안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24. (생략) <신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24. (현행과 같음) 25.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제Ⅲ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제시한 7가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중 제6원칙(협동조합간의 협동(6th Principle :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지역별, 국가별, 대륙별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특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⁴⁰⁾ 특히 이들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마더(Mother)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고 건전하게 성장케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2017년 10월 정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신흥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적극적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⁴¹⁾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42)에서 벤처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아래와 같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40)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새마을금고법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등 참조

41)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7.10.

42)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 행	개선안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1~2. (생략) <신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사회적경제기금 출연 또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2조 등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차원의 사회적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과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감안할 경우 이와 관련된 기금 조성 시 정부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의 사례처럼 사회의 구성원이 비용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금을 출연 또는 투자 시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⁴³⁾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현재의 특례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금” 등에 민간투자자가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선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 제2조 제19호에 따른(이하 생략) 1~2. (생략) <신설>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 제2조 제19호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이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경제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측면에서 조세지원방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단 계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구매 제도 등을 도입하고 구매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온라인 판로 확대, 박람회 개최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 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구매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정당성은 현재 국회의 논의 중인 사회적경 제기본법안 제36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⁴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한도 로 하여 구매대금 0.2%(또는 0.1%)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 소기업의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신설되었다. 여기서 상생결제제도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 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 하며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⁴⁵⁾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 터 60일 이내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야 한다.⁴⁶⁾ 현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매출의 규모가 작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 지급하는 등의 상생결제제 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조건을

4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 용카드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47) 2016년 경영공시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3.2억원 수준으로, 영세한 사업구조를 지 니고 있다.

완화하거나 신규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일정률 이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매출을 안정적으로 창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포괄적으로 모든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보다는 주로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입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선안
<신 설>	제8조의4(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1천분의 2 2.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1천분의 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연동되는 내용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100%를 면제 받는다고 하여도, 법인세의 10%에 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키고 법인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물론,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기에 국세의 특례제도를 지방세에서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아래와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선안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이하생략) ……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u>법인지방소득세</u>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 <u>법인지방소득세</u>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이하생략) ……

V. 결 론

현 정부의 국정철학 중 사람중심 경제의 대표적인 핵심정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이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빈부격차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와 현행 법체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정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지원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출자자 또는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지원방향을 논한다면 첫째, 실효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출자 또는 투자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간접적인 조세지원 정책위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은 상법상의 회사, 협동조합, 민법상 재단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는데, 이들 조직 간의 세제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과는 달리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주주 또는 주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는데 다소 제한적이다. 이처럼 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자 측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자 측면, 그리고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세 가지 관점에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자 측면에서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고, 출자지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이 설치될 경우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투자에 대해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며,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자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이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고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들 조직이 생산한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일정률 이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으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기획재정부.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 김종걸 외 10인. 2015.12. 「사회적금융기금의 국제비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김진수. 2011. 「사회적기업과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소진광. 1999.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4(1) : 29-47.
- 이철선 외 5인.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2015-52)
- 전병욱. 2015.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사회적기업연구 제8권 제2호 : 37-58.
- 최슬기외 11인. 2016.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 KDI한국개발연구원.
- Birchall, J. 2013.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during the current recession ; theorizing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2(1) : 1-22
- British Council. 2015. Social enterprise in the UK.
- Chloupkova, Jarka, Gunnar Lind Haase Svendsen and Gert Tinggaard Svendsen. 2003. Building and destroying social capital : The case of cooperative movements in Denmark and Poland.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0 : 241-252
- European Commission. 2016. Policy Brief on Scaling the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 Georgeta Ilie. 2013. social economy in europe. *Euromentor Journal ; Bucharest* Vol.4 : 37-48.
- Gide, C. 1904.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HM Treasury. 2013. Consultation on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Majee, Wilson. 2007. Cooperatives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 the case of caring home servic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José Luis Monzón & Rafael Chaves. 2012.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Lambie-Hanson. 2008. Addressing the Prevalence of Real Estate Investments in the 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Center Working Paper 2008-04.
-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 Sean Lowry. 2012. Community Development Fund Institutions Fund : Programs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http :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 : //sehub.net/](http://sehub.net/)(서울 사회적경제포털 홈페이지)

[http : //www.irs.gov/](http://www.irs.gov/)(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 : //www.gov.uk/](https://www.gov.uk/)(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 : //www.law.go.kr/](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시스템)

A Study on Tax Support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Sung Ook Park* · Chung Hyu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foreign tax support system and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proposed as a policy task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and to present a desirable tax policy direction and effective tax support plan. The social economy refers to activities carried out by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economic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that simultaneously generate social and economic valu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ax incentives are also provided to investors and investors in terms of social economic activation, such as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 support system in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by dividing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to the form of corporations and non-corporations, it is more taxable to establish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form of corporations. This can impede fair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 among thes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corporations such as venture companies, there are various tax support systems such as income deduction and 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but there seems to be no other tax support system other than the designated don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irst, the tax support policy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way of giving tax benefit to investors or investors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equity with venture companies.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the same tax environment so that these organizations can compete fairly. In order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tax policy, the tax support plan from three viewpoints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courage investors' investment i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ax support is required to exempt income tax exemption on dividends, 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and equity trans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a tax deduction for the contribution or investment of the social economic fund to a certain extent and to set up a tax credit system in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First Author

** Ph.D Student,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Certified Tax Accountant, sch4226@cu.co.kr, Corresponding Author

order to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o the cooperative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Second, to facilitate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produced by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a certain amount of tax deduction for a certain period of purchase price. Third,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rticle 135 of the current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amended and linked with Article 85-6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is wa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policy direction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which is the policy task of the government which is aimed at the 'people-centered economy', and to suggest the taxation support method specifically for the investment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Key words〉 Social Econom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Restricted Tax Act, Contributor or Investor, Cooperative